

변경대비표

1. 대상펀드 :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2. 변경사유 : 주식형 투자신탁 위험등급 상향(2등급 → 1등급), 중소형주 및 고배당주 정의추가,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, 재무제표 갱신 및 법령변경 사항 반영, 종류수익증권신설 (Class S-P 수익증권), 환매수수료부과기간 기재방식 정정(3개월 → 90일)
3. 효력발생일 : 2015년 4월 30일
4. 변경내역 :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-	Class S-P 추가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환매조건부매수	-	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*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■ 동양 중소형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)	-	중소형주(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100위까지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인 종목의 시가총액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) 또는 고배당주(직전회계연도 결산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이거나 과거 3년 동안 2회 이상 배당실적이 있는 주식)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다.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-	<p>※ 중소형주 : 편입일 전일 증가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100위까지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편입일 전일 증가 기준으로 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인 종목의 시가총액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</p> <p>※ 고배당주: 직전회계연도 결산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이거나 과거3년 동안2회 이상 배당 실적이 있는 주식</p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다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위험등급 2등급	위험등급 1등급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Class S-P 추가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</p> 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)</p> <p>① 세액공제(2014. 11.부터)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154%(지방소득세 포함)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% (법인세 14%, 지방소득세 14%)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</p> 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)</p> <p>① 세액공제(2015. 11.부터) 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2014년 3월 7일 기준	2015년 3월 7일 기준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-	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